

[제 3호 안건] 제 2 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료					
일시	2023년 6월 26일(월)	장소	학부모상주실	제안자	김새롬
심의안건	유치원 규칙 개정안				
심 의 내 용					

I. 목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개정('22.11.22.)과 사회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여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여 보다 명확한 규칙을 근거로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가. 제 1장 총칙

- 1)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변경 시 별도로 수정하지 않도록 조정

나.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 1) 제7조 휴업일 토요일 포함 및 개교기념일 수정, 휴업일 지정 관련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으로 변경

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 1) 제9조 원아정원 기준 수정

라.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1) 제10조 1항 교육과정을 포함하며 2항의 교육내용 수정

마.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 1) 제12조 수업운영방법 2항 수정, 3항,4항 삭제 및 교육 및 방과후 시간 탄력적 운영, 교외체험학습 및 원격 수업 전환 가능 내용 명시

바. 제6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퇴학 및 졸업

- 1) 제16조 수료 및 졸업 내용에 수료 관련 내용 추가

사. 제7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 1) 제18조 기타 수업비용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로 변경

아. 제8장 교직원 관리 규정

- 1) 제 19조 연수연찬, 제 20조 교직원의 상벌 삭제
- 2) 제 21조 근무규정을 제 19조로 수정하여 교육공무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수정

자. 제9장 학칙개정절차

- 1) 제22조 학칙개정 절차는 제 20조로 수정하고 학칙개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 2) 제23조 시행규칙은 제 21조로 번호 수정

III. 세부 내용

가. 함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나. 함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개정안)

함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2023.3.28.)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유치원 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은 본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유치원 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 에 따라 본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변경 시 별도로 수정하지 않도록 조정
제 2 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7조(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 나. 개교기념일(5월6일) ② 제1항 제2호와 6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3호, 4호, 5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년 180일 이상으로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제 2 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7조(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나. 개교기념일(5월 1일) ② 제1항 제2호와 6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3호, 4호, 5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유치원의 장이 매년 수업일수를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오류 수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개정 큰 변경
제 3 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제9조(원아정원) ① 원아 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유치원 원아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제9조(원아정원) ① 본원의 학급당 정원은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학급편성 기준에 의한다.	수정
제 4 장 교육내용 제10조(교육내용) ① 만3, 4 ,5세 누리과정은 1.신체운동·건강, 2. 의사소통, 3. 사회관계, 4. 예술경험, 5. 자연탐구로 한다. ② 위 각 영역에 제시된 교육내용은 수준별(Ⅰ·Ⅱ·공통수준)로 유아의 발달에 알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10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교육내용은 유치원 및 지역사회의 상황,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추가 교육과정 에 관한 내용 포함 및 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5 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 5 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12조(수업운영방법) ② 방과후 과정: 하루 교육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며, 방과후 과정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방과후과정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③ 유치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유치원의 장은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운영방법) ② 방과후 과정: 하루 교육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며, 방과후 과정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 을 거쳐 정한다. ③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감염병 확산 등 필요시 교육 및 방과후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정, 삭제 및 추가
제 6 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퇴학 및 졸업	제 6 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퇴학 및 졸업	
제16조 (수료 및 졸업) ① 유치원의 장은 원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원아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본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6조 (수료 및 졸업) ① 유치원의 장은 원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원아의 수료 및 졸업 을 인정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본 유치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료증서 및 졸업장 을 수여한다.	수정
제 7 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 7 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18조 (기타의 비용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의 징수는 유치원의 장이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8조 (기타의 비용징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징수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수정 및 삭제
제 8장 교직원 관리 규정	제 8장 교직원 관리 규정	
제 19조 (연수연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재연구, 수업연구, 교직원 연수 등은 유치원 교육계획에 의한다. 제 20조 (교직원의 상벌) 교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원내 교직원 상벌 규정에 의한다. 제 21조 (근무규정)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08:40-16:40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의 출근은 교육과정 운영 10분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원장의 명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② 교직원의 복장은 품위유지를 위하여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19조 (근무규정) 교직원의 관리는 공무원 관리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수정 및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③ 기타 사항은 유치원 교육계획,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 9장 학칙개정 절차	제9장 학칙개정 절차	
제 22조 (학칙개정 절차) 학칙의 개정은 유치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 23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제20조 (학칙개정 절차) 유치원 규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 21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내용 및 번호 수정

함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칙

1998. 01. 30. 학칙 제정
2006. 11. 30. 학칙 개정
2008. 11. 20. 학칙 개정
2012. 03. 01. 학칙 개정
2012. 12. 11. 학칙 개정
2023. 06. 27. 학칙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유치원 규칙은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유치원은 함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 3조 (위치) 본 유치원은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55에 둔다.

제 4조 (적용범위) 본 학칙은 본원 원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 5조 (교육연한) 본 유치원은 교육연한을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원장이 수료한 원아에게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제 6조 (학기) 본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①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 2학기는 여름방학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이듬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7조 (휴업일)

① 본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가. 토요일 및 판공서의 공휴일

- 나. 개교기념일(5월 1일)
- 다. 여름 및 겨울방학
- 라. 학년말 휴가
- 마. 기타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 공휴일
- 바. 재량휴업일

- ② 제1항 제2호와 6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3호, 4호, 5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유치원의 장이 수업일수를 매년 180일 이상으로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 ③ 유치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로 휴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의 장은 지체 없이 관찰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 편제 및 원아 정원

제 8조 (학급수) 본 유치원의 학급 수는 교육청의 인가에 의한다. 학급편성은 동일 연령의 학급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원아정원) 본원의 학급당 정원은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학급편성 기준에 의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 10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①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② 교육내용은 유치원 및 지역사회의 상황,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제 11조 (수업일수)

- ① 본 유치원의 수업 일수는 매년 180일 이상으로 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 ② 유치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2조 (수업운영방법)

- ① 본 유치원은 기본교육과정 : 하루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계절과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② 방과후 과정: 하루 교육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며, 방과후 과정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 ③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감염병 확산 등 필요시 교육 및 방과후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 6 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퇴학 및 졸업

제 13조 (입학)

- ① 본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천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 ② 본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 원의 원아모집 시기, 원아모집 방법은 유치원의 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제 14조 (전학)

- ① 본 유치원에 전학하려는 자는 재학한 유치원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원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유치원장의 결재를 득하고 생활기록부를 송부한다.

제 15조 (퇴학) 본 유치원에서 퇴학하려는 자는 퇴학사유를 기재한 퇴학원을 보증인 연서로서 유치원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 16조 (수료 및 졸업)

- ① 유치원의 장은 원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원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② 유치원의 장은 본 유치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료증서 및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7 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 17조 (수업료 및 입학금) 본 유치원의 원아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과 경기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8조 (기타의 비용징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징수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 8 장 교직원 관리 규정

제 19조 (근무규정) 교직원의 관리는 공무원 관리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 9 장 학칙개정 절차

제 20조 (학칙개정 절차) 유치원 규칙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 21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유치원의 장이 행한 조치는 이 학칙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